

### III. 결론 및 시사점

-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국내 도입 시 EU Solvency II에서 활용한 경과조치를 벤치마크하여 연착륙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 - EU Solvency II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경과조치들을 도입함.
    - 경과조치 도입은 새로운 규제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기존 가용성에 대한 간섭을 제한<sup>4)</sup>
  
- EU Solvency II에서 활용한 주요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음.
  - 가용자본: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,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 완화
  - 요구자본: 주식리스크,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의 단계적 반영
  - 자본요구조건 유예기간 제공,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연장
  
- 특히, 국내에서는 가용자본과 관련된 경과조치(책임준비금 금액, 무위험 이자율 등)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연착륙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.

4) Solvency II: transitional measures and the treatment of participations(PRA 2015).

-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, 저금리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급락하면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.
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선행적으로 충분히 수행하여 구체적인 경과조치 방식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함.
-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부채시가평가방안, 시행시기 등과 함께 적절한 경과조치 방식 및 기간이 결정되어야 함.
    - 경과조치 설계 시 부채시가평가로 인한 가용자본 영향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요구자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함.
  - 이를 위해서는 영향평가의 준비, 실행, 결과, 반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설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.